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10. 7. 정부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 10. 8.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전체회의(2024. 11. 4.)

상정 · 축조심사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11. 13.)

상정 · 축조심사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1. 22.)

상정 · 축조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2. 17.)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내용

(제안설명: 정부)

제안이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하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해당 외국인의 보호 개시 또는 보호기간 연장 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를 마련하고 당사자인 외국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3. 3. 23. 선고 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해당 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심사, 보호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보호명령서를 발급하거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설정(안 제63조)

- 1)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18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외국인이 「국가보안

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계속 보호 승인을 받아 3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 중인 외국인의 보호기간이 3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계속 보호 승인을 받도록 함.

나. 보호해제된 외국인의 재보호(안 제63조의3 신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해제된 외국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거나 보호를 해제할 때 붙인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을 다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호 관련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안 제66조의3 신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명령서를 발급하거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외국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함.

라.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66조의4부터 제66조의17까지 신설)

1) 외국인 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계속 보호 승인 및 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

2)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함.

- 3) 외국인보호위원회에 그 사무처리 및 조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외국인보호 조사관을 두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1) 보호기간 상한을 18개월로 설정함이 적정한지와 관련하여, 이에 대하여 최대 18개월을 절대적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있는 「유럽연합(EU) 송환지침」은 형법상 제재의 결과로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 대해 해당 지침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점,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강제퇴거 집행을 기피할 목적으로 보호 중 난민신청을 할 경우 난민심사 및 소송 종결시까지 강제 퇴거 집행이 불가능한 점, 18개월 범위 내에서의 추가 연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계속 보호 승인을 받도록 규정(안 제63조제1항단서)하여 계속 보호 여부에 대해 행정기관장이 아닌 중립적·객관적 기관에 의한 판단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2) 보호해제 후 재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과 관련하여, 상기 요건에 해당하여 재보호할 경우 이론상 기간제한 없는 구금이 가능해 지는 점, 재보호의 요건 중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가 반드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요건에 대한 판단 권한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 관리공무원에게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는 헌법재판소가 구금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여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결정한 취지에 부합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3)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법무부 소속이 아닌 외부인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바(안 제66조의6제3항),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연결되는 사항이므로 외부위원의 수를 직접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 외부위원 수를 과반 이상으로 하한을 정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이와 유사한 논지에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상임위원 정수, 임명과 직급에 관한 사항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부분(안 제66조의6제3항),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실질적인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외국인보호 조사관의 임명 및 자격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안 제66조의15제4항)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개정안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계속 보호 승인의 신청, 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미리 해당 외국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는 내용(안 제66조의3)과 관련하여, 보호 대상자가 절차 진행에 있어 보호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고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보호’ 처

분을 받는 이유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하여 현행법은 대상자에게 보호 사유 등을 기재한 보호명령서를 보여 주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는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점, 현행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법무부 훈령)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신병 확보(긴급보호) 시 변호인선임권에 대해 고지하도록 규정¹⁾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박범계위원)

개정안을 반영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1)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11조(용의자 긴급보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용의자를 긴급보호 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미란다원칙 등 고지문(이하 "고지문"이라 한다)으로 용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이 있고 보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